

제천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4

제출년월일 '97. 6

제출자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95. 12.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제천시보건소조례에 관련된 조문개정
- 제천시보건소의 청사이전으로 인한 보건소의 위치 변경

2 주요골자

제행중 “제천시보건소조례”를 “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동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별표)중 제천시보건소의 위치 “제천시 서부동 3-1”을 “제천시 청전동 653”으로 한다.

3.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및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 붙임 1. 제천시보건소조례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

제천시보건소조례개정조례

제천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제천시보건소조례”를 “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3조중 “법 제6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동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증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6조중 조제목 “수수료”를 “수수료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중 제천시보건소의 위치 “제천시 서부동 3-1”을 “제천시 청전동 65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천시보건소조례</u>	<u>제천시보건소설치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보건소 및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업무)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법 제6조에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p> <p>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② (생략) ③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p> <p>제7조 및 제10조</p> <p>제3조(업무) 법 제9조</p> <p>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p>				
<p>제6조(수수료)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생략)</p> <p>(별표)</p>	<p>제6조(수수료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를 외회하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별표)</p>				
현 행	개 정 안				
기관의명칭	위 치	관할구역	기관의명칭	위 치	관할구역
제천시보건소	제천시 서부동 3-1	제천시일원	제천시 청전동 653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

第4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①地域保健醫療計劃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保健醫療需要 測定

2. 保健醫療에 관한 長短期 供給對策

3. 人力・組織・財政등 保健醫療資源의 調達 및 관리

4. 保健醫療의 傳達體系

5. 地域保健醫療에 관련된 統計의 要集 및 정리

②第1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地域保健醫療計劃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保健醫療計劃을 施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保健醫療關聯機關・團體등에 대하여 人力・技術 및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6條 (地域保健醫療計劃 施行結果의 評價) ①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 또는 市・郡・區의 地域保健醫療計劃의 施行結果를 評價할 수 있다.

②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를 필요한 경우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第7條 (保健所의 設置) 保健所(保健醫療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 (保健醫療院) ①保健所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病院의 要件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保健醫療院을 設置 또는 展止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保健所의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서 행하여지 (주 71)

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 國民健康增進・保健教育・口腔健康 및 養養改善事業
2. 傳染病의 預防・관리 및 診療
3.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事業
4. 老人保健事業
5. 公衆衛生 및 食品衛生
6. 醫療人 및 醫療機關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7.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8. 應急醫療에 관한 사항
9. 農漁村等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保健診療員 및 保健診療所에 대한 指導등에 관한 사항
10. 藥事에 관한 사항과 麻藥・向精神性醫藥品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精神保健에 관한 사항
12. 家庭・社會福祉施設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保健醫療事業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查에 관한 사항
15. 障碍人の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增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

第10條 (保健支所의 設置) 地方自治團體는 保健所의 著落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保健所의 支所(이하 "保健支所"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第11條 (保健所의 組織) 保健所의 組織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地方自治法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專門人力의 適正配置등) ①保健所에는 所長과 第9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免許・資格 또는 專門知識을 가진 人力(이하 "專門人力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方公務員法 第30條의 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所간에 專門人力등의 交流를 할 수 있다.

③保健福祉部長官과 市·道知事는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訓練을 施行하여야 한다.

④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所의 專門人力등에 대하여 그 配置 및 운영실태를 調査할 수 있으며 그 配置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是正을 위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助言 또는 권고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人力등의 配置 및 任用資格基準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의 대상, 기간, 評價, 그 결과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施設의 이용) 保健所는 保健醫療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를 위하여 醫師·齒科醫師·韓醫師·藥師등에게 그 施設을 이용하게 하거나, 他人의 의뢰를 받아 實驗 또는 檢査를 할 수 있다.

第14條 (手數料등) ①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 者로부터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診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5條 (保健所의 施設) 保健所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16條 (保健所등의 표시) 保健所長은 地域住民이 保健所 또는 保健支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第17條 (保健所등의 會計)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手數料 및 診療費의 收入은 地方財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收入對替經費의 方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會計事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簡素化할 수 있다.

第18條 (保健教育등의 調整등) ①地域住民 다수를 대상으로 保健教育을 실시한 者는 그 결과를 保健教育을 실시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醫疗機關이 아닌 者가 地域住民 다수를 대상으로 健康診斷·豫防接種·巡迴診療등 住民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教育을 제외)